

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1. 5. 18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(나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경감기준

제3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목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가.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: 100분의 100

나.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90

다.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80

라.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70

3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 위 반	2차 위 반	3차 이 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3항제1호	30	60	100
나.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·식당·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1항제1호			
1) 화장실		400	400	400
2) 식당		400	400	400
3) 탈의실		200	200	200
다. 법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제1호	100	200	300
라. 법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마. 법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제3호	100	200	300
바.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제4호	100	200	300
사.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	법 제26조제2항제5호	100	200	300

<p>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</p>				
<p>아.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26조제1항제2호	300	400	500
<p>자.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26조제2항제6호	100	200	300
<p>차.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(법 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 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	법 제26조제2항제7호	100	200	300
<p>카.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 급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26조제2항제8호	100	200	300
<p>타.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 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 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</p>	법 제26조제2항제9호	100	200	300
<p>파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</p>	법 제26조제3항제5호	30	60	100
<p>하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 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경우</p>	법 제26조제3항제6호	30	60	100
<p>거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</p>	법 제26조제3항제6호	30	60	100